

중국의 의료분쟁 처리현황

정 설 천*

I. 중국 의료분쟁의 현황	1. 감정의 문제점
1.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IV. 증거제출 책임
II. <의료사고처리조례> 실시 후 의료분쟁의 조사 및 분석	1. 의료분쟁 처리시 적용하는 법률·법규
III. 중국 의료분쟁의 처리	

I. 중국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2003년 중국 위생 사업의 발전 현황

- 2003년 말 기준 중국 위생 기관 총 29만1천 개
- 2003년 말 기준 중국 병원 총 17764개
- 2003년 말 기준 중국 질병예방센터(방역소) 총 3584 개
- 2003년 말 기준 중국 의료기관의 침대수 총 314만4천 대
- 2003년 말 기준 중국 위생분야 종사자 총 527만5천 명, 의료기관 위생인력 495만6천 명, 전문의 및 전공의 174만 명 (1 : 0.55), 등록된 간호사 124만 9천 명(1 : 0.4)
- 2003년 중국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진료 횟수 1.7회
- 2003년 중국 의료기관 전체 진료 건수 총 20억9600만 건
- 2003년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 건수 총 20억 건
- 2003년 중국 의료기관 입원환자 연인원 6092만 명

*중국위생법학회 이사/중국병원관리학회권리보호부 부주임/중국의사협회권리보호위원회 위원/북경화위 변호사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03년 중국 국민 10000명당 입원환자수 483명
- 2003년 위생부문 종합병원 의사의 일평균 진찰횟수는 5회, 일평균 병상수는 1.5 개
- 2003년 중국 의료기관 침대사용률 58.7%
- 2003년 위생부문 종합병원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108.2위안(元), 퇴원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3910.7 위안
- 2003년 위생부문 종합병원 외래진료 환자의 진료비에 약품비는 54.7%, 검사치료비는 28.4%
- 의사와 입원환자수의 비율 : 2.9%
- 간호사와 입원환자수의 비율 : 2.1%

II. <의료사고처리조례> 실시 후 의료분쟁의 조사 및 분석

① 통계에 의하면 2002년9월 조례 실시후, 3급병원 의료분쟁은 그 전에 비해 17.98%, 2급병원은 34.71%, 1급병원은 12.96%, 급수 미정의 병원은 40% 증가했다.

과별 의료분쟁 횟수로 보면, 1,2,3급병원 보통외과가 여전히 1위이고, 2급병원 산부인과가 2위이었다.

조례 실시후 의료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보면 합의, 행정수단, 소송의 비중은 각각 83.31%, 6.2%, 10.48%이었다.

3급병원 외래진료자의 신고 200건 중에 의료배상 요구는 70-100건, 법적 소송제기는 20-30건이었다.

② 의료분쟁 발생 후손해배상 요구는 73.92%, 사과 요구는 15.28%, 담당 의사나 책임자의 행정처분 요구는 7.12%, 병원에 대한 문책은 3.29%, 담당 의사나 책임자의 형사처벌 요구는 0.39%로 나타났다.

<환자의 손해배상 희망금액>

3급병원

단위 : 위안

희망금액	10만 이하	10~50만	50~100만
	75%	20.1%	5%

실제결과	배상책임 없음	10만 이하	10~50만	50만 이상
	62.53%	36%	1.46%	0.08%

2급병원

단위 : 위안

희망금액	10만 이하	10~50만	50~100만
	92.5%	6.37%	1.1%

실제결과	배상책임 없음	1만 이하	1~10만	10~50만
	43.44%	33.34%	20.7%	2.53%

1급병원

단위 : 위안

희망금액	1만 이하	1~10만	10~50만	50만 이상
	59.09%	6.81%	6.81%	0%

실제결과	배상책임 없음	1만 이하	1~10만	10~50만
	42%	41%	16%	1%

③ 통계에 따르면 현재 54.84%의 병원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6.45%는 협상중이며, 38.17%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 의료분쟁 관련 개념

의료분쟁 · 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담당자의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발생하는 분쟁

醫患분쟁 · 진료 과정 중 환자와 의료기관 및 의료담당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기타 민사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의 총칭

의료사고 · 의료기관 및 의료담당자의 의료위생관리법률, 행정법규, 관련규정, 진료간호규칙과 관례에 위반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의료사고의 등급

1급의료사고 : 환자의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일으킨 경우

2급의료사고 : 환자의 중도(中度) 장애나 신체조직 손상을 일으켜 심한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3급의료사고 : 환자의 경증 장애나 신체조직 손상을 일으켜 가벼운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

4급의료사고 : 환자의 분명한 신체손상을 일으켜 기타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의료사고의 구성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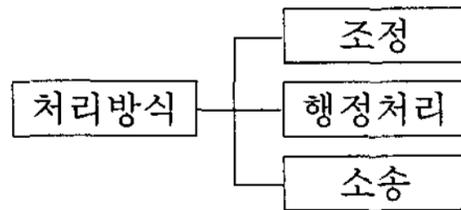
- ① 주체 · 의료기관 및 의료담당자
- ② 객체 · 진료 과정 중
- ③ 실수(위법성) · 의료위생관리법률, 행정법규, 관련규정, 진료간호규칙과 관례의 위반
- ④ 부정적인 결과 · 사망, 장애, 일반 기능장애, 기타 (위생부[衛生部-보건복지부해당] 실시세칙 규정)
- ⑤ 인과관계 · 의료담당자의 실수는 환자의 손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음

(4) 민사 월권행위의 구성요건

- ① 행위인의 실수 ② 피해자의 손해 ③ 행위인의 위법성
- ④ 피해자의 손해와 행위인의 실수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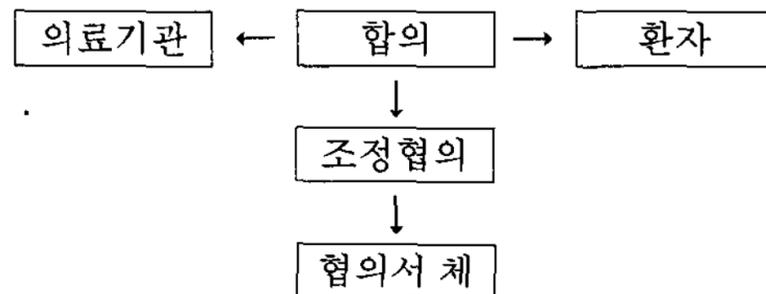
Ⅲ. 중국 의료분쟁의 처리

1)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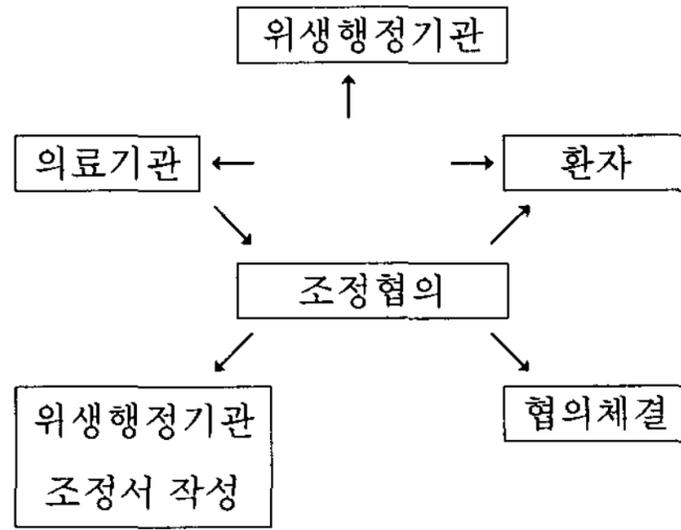


①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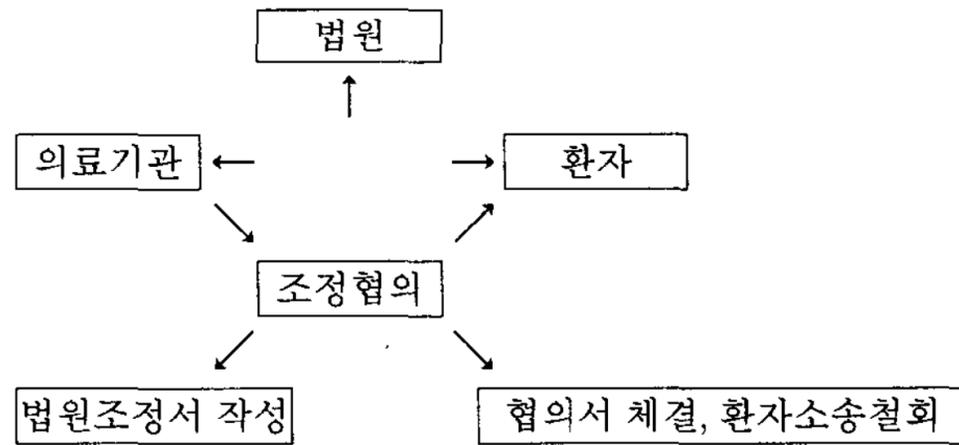
가. 병원과 환자 간의 자체적인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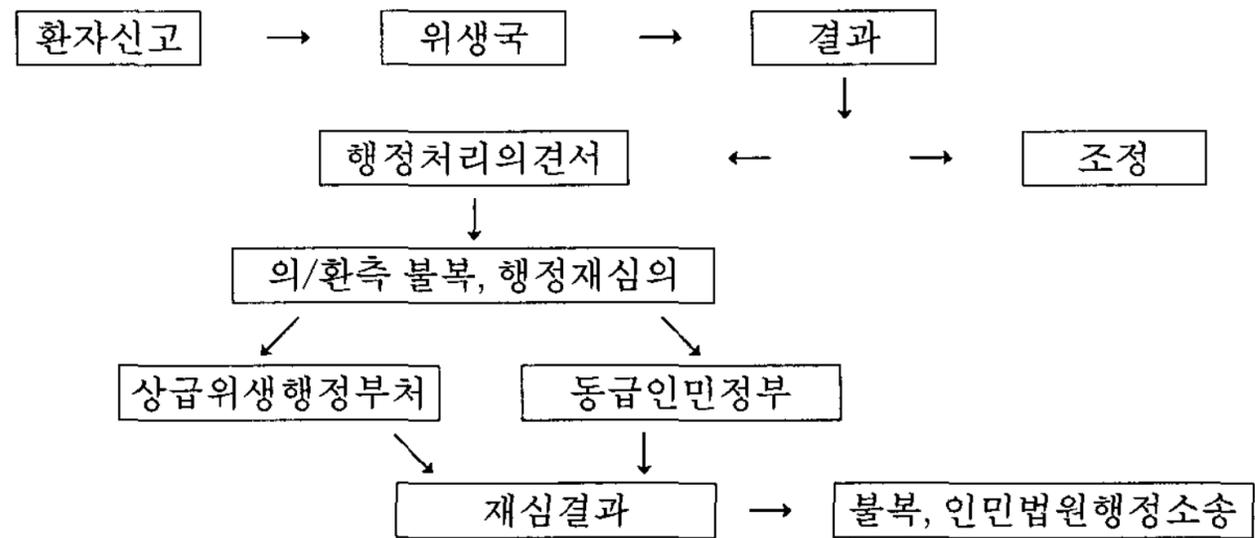
나. 위생 행정 기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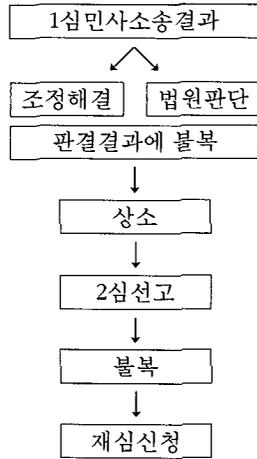
다. 법원조정



② 행정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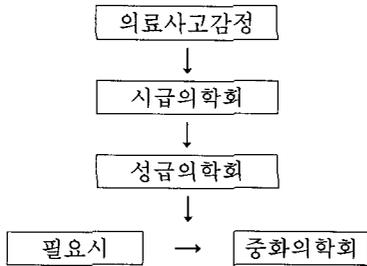


③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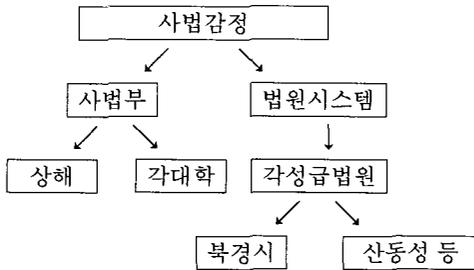


2) 감정(鑑定)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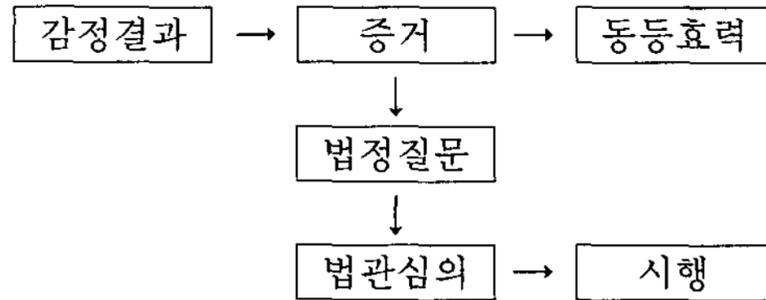
① 의료사고 감정



② 사법감정



3) 감정결과가 소송에서의 역할 의료사고의 사법감정결과는 증거로 취급



1. 감정의 문제점

- ① 의료사고 감정 전문가의 법률지식과 감정경험 부족으로 인해 학술적인 토론이 지나치게 많다.
- ② 사법 감정 전문가의 임상경험이 부족하다.
- ③ 감정결론 작성시의 결함
 - 가. 분석 과정중 어휘의 선택이 타당치 못하다.
 - 나. 인과관계 분석이 부족하다.
 - 다. 책임비율 구분의 난이도가 높다.
 - 라. 병원 측에 책임이 있을 경우 문책하기 어렵다.
- ④ 일부 전문가는 병원에 대한 비호나 학술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의료사고를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을 의료사고로 하여 감정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이 확보되지 않다.
- ⑤ 사법감정은 환자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병원의 배상 부담이 가중된다.

IV. 증거제출 책임

의료행위에서 기인한 소송의 경우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의 제출 책임이 의료기관에게 있다.

1. 의료분쟁 처리시 적용하는 법률·법규

① 國務院 법규

가. 2002년9월1일부터 발효된 <의료사고처리조례>

나. 1994년9월1일부터 발효된 <의료기관관리조례> 기타 관련 규정

② 국가 법률 : <민법통칙><민사소송법><헌혈법><의사법><계약법> 기타 관련 법률

③ 최고법원의 사법해설 <민법통칙의견>(民通意見)<민사소송법의견>(民訴意見)<정신적 손해 배상 통지>(精神賠償通知)<민사소송증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民訴證據若干問題)2003년1월6일<통지> <신체적 피해 배상>(人身損害賠償)

1) 최고인민법원 <의료사고처리조례>에 의한 의료분쟁 민사 안건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조례 발효 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배상분쟁은 법원에 제기되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의료사고 이외의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의료배상분쟁은 민법통칙에 의해 처리한다.

인민법원이 조례 발효 전 민법통칙, 원래의 <의료사고처리방법> (醫療事故處理辦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심판한 민사소송은 재심의될때 조례의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민법원은 민사심판 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책으로 인해 의료사고 사법감정을 채택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의학회기구에 그 감정을 맡겨야 한다. 의료사고 이외의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의료분쟁일 경우 사법감정 필요하면 <인민법원 대외위탁 사법감정 관리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다.

인민법원의 사법감정 신청과 사법감정 결론에 대한 심의는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조례 발효 후에 인민법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배상분쟁 민사소송을 심판하는 경우, 의료사고 배상책임의 소재는 조례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판정한다.

인민법원 의료사고 민사소송 심판 중의 기타 문제는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④ 법률과 법규의 관계

가. 사법 실천 중 조례와 민법통칙의 관계

나. 최고인민법원의 非의료사고 판정에 대한 이해

a. 환자측은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 및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사고 감정은 의료과실로 분명치 않은 신체적 손해를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오면 <조례> 제4조 4급의료사고가 환자의 분명한 신체손상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사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b.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은 환자의 생명 및 건강권을 침해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주었지만 의료사고 감정 담당자 수준의 한계나 기타 원인으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감정하는 경우

c. 의료분쟁의 사실이 명료하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의료행위의 적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환자의 손해는 분명히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어서 전문적인 감정을 하지 않아도 의료사고가 아닌 기타 의료분쟁으로 판단할 수 있거나 분명한 의료과실이므로 의료기관도 인정하고 감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